

의안번호	2200690
의 퇴 인	김소희 의원
회 답 일	2024. 7. 5.
추 계 번호	24A1073

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0억원(연평균 2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해상풍력발전위원회(안 제6조), 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7조)	200	200	200	200	200	1,000	200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해상 풍력발전위원 회)	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위원 회 구성·운영)	위원회는 그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, 기술자문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(제8항)	재량규정
3	안 제9조(추진 단의 설치)	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을 둔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10조(해 상풍력입지정 보망의 구축·운 영)	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향, 어업활동, 환경·해양환경, 해상교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·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11조(예비지구의 지정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풍황계측기를 매수할 수 있음.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·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 및 제75조를 준용함(제6항)	재량규정
6	안 제13조(기본설계의 수립·확정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(제2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음(제4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7	안 제14조(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)	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, 주민대표,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8	안 제16조(발전지구의 지정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9	안 제17조(발전지구 계통의 연계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전기사업법」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0	안 제30조(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11	안 제31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2	안 제32조(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·운영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
13	안 제33조(전문연구기관의 지정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4	안 제34조(국제협력 추진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15	안 제35조(수출 지원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(제1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·인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6	안 제37조(수산업 등의 지원)	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(제1항)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,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·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해상 풍력발전위원 회)	○	·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2	안 제7조(위원 회 구성·운영)	○	
3	안 제9조(추진 단의 설치)	X	· 추진단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되므로 추가재정소 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
4	안 제10조(해 상풍력입지정 보망의 구축·운 영)	X	· 현재 “해상풍력 입지정보망”(사업비 50억원, 2020.10. ~ 2021.12.)이 구축되어 있음 · 제정안에 따라 동 정보망이 고도화·확장될 가능성이 있 으나, 현시점에서 향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 계가 있음
5	안 제11조(예 비지구의 지정 등)	X	·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 제11조의 (해상풍력발전지 구) 예비지구 지정 또는 안 제13조의 예비지구 기본설 계 수립과 관련하여 풍황계측기를 매수하거나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,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라 향후 지정될 예비지구의 수 및 해당 예비지구에서 의 풍황계측기 설치 수 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·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는 “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 단지개발지원” 사업(2023년 예산 80억원)을 통해 “해 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을 위한 조사권역별 기초조사”를 시행하고, “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환경성·수용성·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 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”하고 있음
6	안 제13조(기 본설계의 수 립·확정 등)	X	
7	안 제14조(민 관협의회 구성· 운영)	X	·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등이 민관협의회를 구 성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통상 기본경비 내 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8	안 제16조(발 전지구의 지정)	X	·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지구에 재정적 지 원을 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, 현시점에서 제정 안에 따라 향후 지정될 발전지구 수 및 해당 발전지구 에 대한 지원 수준 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· 참고로,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다 음과 같음(전북 서남권 해상풍력(2.4GW), 신안 해상풍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			력(8.2GW), 울산(1.4GW) + 동남권(4.6GW) 부유식 해상풍력, 제주(0.6GW) + 인천(0.6GW) + 기타 등) ¹⁾
9	안 제17조(발전지구 계통의 연계)	X	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전사업자의 공동접속설비 건설비용 등을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-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“한전이 선투자하여 매년 회수금액 산정 후,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설비용량에 비례하여 대금을 회수하면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”
10	안 제30조(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)	X	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상풍력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하거나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나, 현시점에서 향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-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관련 전문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음 -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: 해상풍력 발전기 및 발전단지 전반 - 한국재료연구원: 블레이드 설계 및 시험 - 한국기계연구원: 베어링 등 회전기기, 설치선박 - 한국생산기술연구원: 베어링 시험 - 한국전자기술연구원: 발전단지 제어 및 전력 생산량 예측 -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: 풍력발전기 부품 시험 - 한국전력 전력연구원: 해상풍력 발전기 및 발전단지 전반 - 고등기술연구원: 해상풍력 발전기 및 발전단지 전반
11	안 제31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	X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해상풍력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현행 사업 이외에 제정안에 따라 향후 추가로 지원할 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12	안 제32조(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·운영 등)	X	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는 “해상풍력산업지원” 사업(2023년 예산 164.5억원)을 통해 해상풍력 지원센터 구축,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,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13	안 제33조(전문연구기관의	X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상풍력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하거나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	지정)		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나, 현시점에서 향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·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관련 전문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음 –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: 해상풍력 발전기 및 발전단지 전반 –한국재료연구원: 블레이드 설계 및 시험 –한국기계연구원: 베어링 등 회전기기, 설치선풍 –한국생산기술연구원: 베어링 시험 –한국전자기술연구원: 발전단지 제어 및 전력 생산량 예측 –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: 풍력발전기 부품 시험 –한국전력 전력연구원: 해상풍력 발전기 및 발전단지 전반 –고등기술연구원: 해상풍력 발전기 및 발전단지 전반
14	안 제34조(국제협력 추진)	X	·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거나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등에 지원을 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현행 사업 이외에 제정안에 따라 향후 추가로 지원할 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·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의 “에너지국제공동연구(R&D)”(예특회계, 2023년 예산 229억원) 중 풍력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15	안 제35조(수출 지원)	X	미래시장 진입 대비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·부품 설계, 해상구조물 기술 및 신흥시장 특화형 풍력터빈 현지실증 등을 포함 전략 수립 등 · 또한, 기획재정부의 “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”사업(기후대응기금, 2023년 예산 76.8억원)에는 해상풍력 관련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(2022년 예산 기준으로 67.6억원 중 해상풍력 관련 지원은 5.9억원 수준이었음)
16	안 제37조(수산업 등의 지원)	X	·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라 향후 추가로 지원할 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1) 관계부처합동, 「주민과 함께하고,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」, 2020. 7. 17.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거나,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항목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신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(산업통상자원부)의 유사 사례 등을 반영하여 추계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해상풍력발전위원회(안 제6조)·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7조)
 -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두고,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운영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실무위원회는 분쟁조정, 기술자문 등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음
-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
 - 유사 사례로는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(국무총리 소속,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)로 함
 - － 관련 예산은 “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” 사업(2023년 예산 82억원) 내 “수소경제 정책자문 및 위원회 운영 지원”(2억원)으로, 수소경제 정책자문 전문위원회 운영 1억 5,200만원, 수소경제 위원회 운영지원 4,800만원임
- 제정안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에 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

10억원 수준으로 추계됨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3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해상풍력발전위원회(안 제6조), 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7조)	200	200	200	200	200	1,0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